공고 제 47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8월 20일

대방동장 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**	조** 1962-03-02	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다길	거주불명등록 2019-08-20